

##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개정(2023.07.18.) 사항을 반영하고,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,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(안 제 10조, 안 별표 3)
- 장기재직휴가 확대(안 제12조제3항)
  -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: 5일(신설)
  -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: 20일 → 30일(확대)
-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(안 별표 4)

#### 4. 의견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35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  - 의견 제출자 주소 :
  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##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”을 “경력직공무원”으로, “민간경력”을 “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”으로, “같이 한다”를 “같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
별표 3 중 “(제9조 관련)”을 “(제10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일)
--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0조 관련)

1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가.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 안함

나.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
※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

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③ ~ ⑭ 생략

**경조사 휴가일수표** 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